## 80. 직물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통상성간질성폐렴

성별 남 나이 53세 직종 직물업 업무관련성 낮음

1. 개요: 근로자 이OO는 1988년 1월부터 약 17년간을 섬유회사에 근무해 오다 2005년 1월 (주)OO섬유에 입사하여 섬유기계 조작원 업무를 하던 중 2005년 12월 통상성간질 성폐렴으로 진단받았다.

- 2. 작업내용 및 환경: 근로자 이OO의 작업내용은 제직공정의 토요타 기계를 관리하는 업무로 토요타 기계 40대에 경사 빔 교체와 위사 투입 작업으로 매일 1회 정도 100kg 정도를 40대 기계에 분산 배치하는 작업과 기계 보수 작업으로 매일 1-2대의 기계를 분해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. 3교대 형태의 근무를 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오전반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), 오후반 2시부터 11시까지, 야간반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다. 휴일근무는 월 2-3회 하였다.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과 휴게공간은 없었다. 2007. 5. 22. 연구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결과 상기 근로자가 작업하였던 제직설비 (면 20% 혼방)에 대한 면분진의 공기 중 노출농도는 면분진 노출기준(0.2 mg/m3) 미만이었다
- 3. 의학적 소견: 이○○은 술은 잘 안 마셨다고 하고 의무기록상 3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다. 과거 특별한 질환은 없었다. 2005년 7월경 두통이 심하여 구미 OO병원 방문, meningitis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 chest PA에서 interstitial lung disease 의심되는 소견 보여 OO대학교 OO의료원으로 전원되어 2005년 9월 HRCT 상 Usual Interstritial Pneumonia and paraseptal emphysema in both lungs 로 판독되었고 당시 시행한 PFT 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뚜렷한 호흡기 증상 또한 없었다. 이후 2005년 12월 VATS Biopsy 결과 UIP로 진단받고 2006년 1월 퇴원하여 이후 현재까지 약 복용하며 외래치료중이며 현재에는 호흡곤란과 기침의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.

## **4. 결론:** 근로자 이〇〇은

- ① 2005년 통상성간질성폐렴으로 진단받았고
- ② 1977년경부터 섬유 직물업에 종사하였고 2005년부터 (주)OO섬유에 근무하면서 면 및 합성섬유 분진에 노출되었는데,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작업공정에 대한 검토 결 과, 현재의 노출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,
- ④ 통상성간질성폐렴 (특발성폐섬유화증)은 면분진의 노출과 관련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으므로.

근로자 이OO의 통상성간질성폐렴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